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3일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의안번호: 2023 - 145

나. 발의자: 정재봉 의원 외 1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1. 23.)

2. 제안이유

「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」의 대상 과제로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관련 조례의 ‘지역제한’ 문구가 지적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서 지역제한 문구인 “서울특별시”를 삭제함(안 제2조 제3항, 제3항제2호)

나.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요건인 서울특별시 거주와 근무지 요건을 삭제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~ 제84조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규제 개선을 위하여 지역제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 제3항, 제3항제2호 :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에서 지역제한 문구인 “서울특별시”를 삭제함
- 안 제4조 :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요건인 서울특별시 거주와 근무지 요건을 삭제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중 “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”이라는 지역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
- 지역제한을 둔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 개선과제인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

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에 해당되어

-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생략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, 제84조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

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 개요
2. 세입 · 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

제120조(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 · 거래조건의 결정,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,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,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· 고시 등

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·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·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